

《도덕과 법치》의 ‘중국’ 상상

김도경* · 정민영**

<목 차>

1. 들어가며: ‘사상품덕’에서 ‘도덕과 법치’로
2. ‘교과 표준’에 근거한 《도덕과 법치》의 변화
3. 《도덕과 법치》 속의 ‘중국’
 - (1) 헌법의 위상 제고
 - (2) ‘기본 제도’라는 설명 방식
 - (3) ‘국가 기구’의 재구성
 - (4) 국가 정체성의 이데올로기
4. 나가며: 《도덕과 법치》의 ‘중국’ 상상

1. 들어가며: ‘사상품덕’에서 ‘도덕과 법치’로

2016년 중국 교육부는 새 학기의 교과서 목록을 발표하면서 ‘도덕과 법치’라고 하는 새로운 교과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¹⁾ 이전까지 ‘품덕과 생활’, ‘품덕과 사회’, 혹은 ‘사상 품덕’ 등으로 불렸던 교과를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도덕과 법치’로 통일한다는 내용이었다. ‘품덕과 생활’은 초등학교 1-2년, ‘품덕과 사회’는 초등학교 3-6년, 그리고 ‘사상 품덕’은 중학교 1-3년에서 이뤄지던 이른바 ‘정치’²⁾ 교과의 명칭이었다. 국가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한 그 교과가

* 제1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조교수(jindujing@knue.ac.kr)

** 제2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석사과정(miny8828@naver.com)

1) 教育部辦公廳, <教育部辦公廳關於2016年中小學教學用書有關事項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1604/t20160428_241261.html(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2016년부터 ‘도덕과 법치’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점이다. 2015년만 하더라도 ‘정치’ 교과는 비교적 많은 수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 ‘품덕과 생활’ 및 ‘품덕과 사회’는 15종의 교과서를 갖고 있었고, ‘사상품덕’ 역시 9종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다.³⁾ 물론 교학대강을 준수해야 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가 있었지만, 최소한 처음부터 하나의 교과서만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도덕과 법치’는 하나의 교과서만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입생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순차적으로 그 대상이 넓어졌고, 지금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교육부가 2019년도의 교과서 목록을 발표하였을 때, ‘도덕과 법치’는 ‘국정(統編)’으로 표기되었다.⁴⁾

그렇다면 ‘도덕과 법치’에 나타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것이 ‘법치’라는 새로운 명칭을 추가 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것이 의무 교육 단계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진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수정된 내용을 통해 현재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변화가 현 중공중앙 지도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상품덕’ 등이 ‘도덕과 법치’로 바뀌게 된 것은 중공중앙의 정책 결정 때문이었다. 2014년에 있었던 18기 4 중전회는 중앙전회 역사상 처음으로 ‘법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그

2) ‘정치’ 교과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차우규, <중국의 초,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16호, 2003; 김도경, <신시기 중국의 ‘정치’ 교과서와 ‘사유·시장·개방’의 의미 변화>, 《중국현대문학》 79호, 2016 등을 참조.

3) 教育部辦公廳, <教育部辦公廳關於2015年中小學教學用書有關事項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s8001/201503/t20150323_189375.html (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4) 教育部辦公廳, <教育部辦公廳關於印發2019年中小學教學用書目錄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1906/t20190605_384649.html (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이와 관련하여 윤세병,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3호, 2019 참조.

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법치'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만들어졌다. 헌법의 날이 제정된다든지, 헌법 선서 제도가 도입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도덕과 법치'도 바로 이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18기 4중전회의 결정은 "법치 교육을 국민 교육 체계에 편입시키고,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춰 중등 및 초등학교에 법치 관련 교과를 설립"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중공중앙이 왜 이 시점에서 '법치' 교육을 강조하는지, 혹은 그 '법치'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18기 4중전회의 '법치'가 '국가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본다.⁶⁾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시장 기제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이를 관리 및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 통치 방식으로는 사회 공평의 실현⁷⁾이나 비효율적 관행의 청산⁸⁾, 부정부패 척결⁹⁾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향후 중국이 '개혁 심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이나 '중국몽(中國夢)'을 실현코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나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¹⁰⁾ 국가 발전이 변화와 혁신 등의 역동적인 힘을 요구한다면, 이를 관리 및 조율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법치'가 일종의 '제동 장치'¹¹⁾로 이해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데 있다. 18기 4중전회가 중앙전

5) 中共中央, <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www.gov.cn/zhengce/2014-10/28/content_2771946.htm(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6) 가령 燕繼榮, <依法治國與國家治理現代化>, 《中國井冈山干部學院學報》2015年第1期; 藍蔚青, <從“抓綱治國”到“依法治國”>, 《黨政研究》2015年第1期; 黃學賢, <法治政府的內在特征及其實現>, 《江蘇社會科學》2015年第1期; 李步云, <依法治國的回顧與展望>, http://www.legaldaily.com.cn/zt/content/2014-11/09/content_5837466.htm?node=69127(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이희옥, <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의 정치논리 - 시장, 법치, 거버넌스의 관점>, 《중소연구》39권 1호, 2015 등을 참조.

7) 俞可平, <依法治國的政治學意蘊>, 《探索與爭鳴》2015年第2期.

8) 任中平, <依法治國必須清除家長制殘余>, 《理論與改革》2015年第4期.

9) 徐曉冬, <依法治國要處理好十大協同關係>, 《人民論壇》2014年第20期.

10) 習近平, <關於《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的說明>, 《求是》2014年第21期.

11) 燕繼榮, 앞의 글, 115쪽.

회로서는 처음으로 ‘법치’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공중앙의 차원에서 ‘법치’가 제기된 것은 18기 4중전회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7년의 제15차 당 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은 국가 거버넌스의 기본 ‘방략(方略)’으로 규정된 바 있다.¹²⁾ 게다가 1980년대부터 중국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법치’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인치(人治)’ 청산의 문제, ‘법치’의 실현 방법, ‘법치’와 ‘법제(法制)’의 구별 등 ‘법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국가 거버넌스’ 차원의 ‘법치’ 역시 그 논의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³⁾ 심지어 그 내용은 중국 교육 과정 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했다. 《사상품덕》 안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 법치의 중요성 등이 그 시장 기제의 확대라는 맥락 속에서 제시되었다.¹⁴⁾ 따라서 2014년의 중앙전회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의미는 이전의 ‘법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 거버넌스’ 차원의 ‘법치’만으로는 ‘정치’ 교과의 이름이 바뀌고 그 내용이 국정화되는 모습을 온전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덕과 법치’의 변화에는 중공중앙이 ‘법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함의가 담겨있을 수 있다. 이는 ‘도덕과 법치’에 나타난 변화야말로 중공중앙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라는 뜻이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이 글 역시 중공중앙의 ‘법치’가 기본적으로 ‘국가 거버넌스’의 차원이 강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상당부분 의무교육 단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덕과 법치’의 변화를 국가 거버넌스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공중앙이 ‘법치’를 통해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도덕과 법치’의 변화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

12)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http://www.gov.cn/test/2007-08/29/content_730614.htm(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13) 조영남, <중국의 법치 논쟁과 정치개혁>,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4호, 2010. 이와 관련하여 Young Nam Cho,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Law": China's Rule of Law Policy as Political Reform,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1, No. 1 (June 2014)를 참조.

14) 박환영, <중국 중등교육에서의 법교육>, 《법교육연구》 7권 1호, 2012.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글은 그 이야기를 '중국 상상'이라는 말로 개괄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공중앙의 관심은 '법치' 교육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에 대한 설명이 이전의 '사상품덕'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이었고 산발적이었다. 반면 '도덕과 법치'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 한다. '법치'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설명하는 데 더 주의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은 방법적으로 중학교 단계의 《사상품덕》과 《도덕과 법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내용상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교과서 편찬 과정에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개별 현장에서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차이에 한계를 지어 주는 것은 역시 교과서라고 봐야 한다. 아울러 의무교육 기간 중 중학교 단계를 선택한 것은 그 내용을 고려한 조치이다. '법치' 관련 내용은 아무래도 고학년(7-9년)에서 다루지기가 쉽다.

2. '교과 표준'에 근거한 《도덕과 법치》의 변화

《사상품덕》과 《도덕과 법치》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교과서의 체제가 확연히 다르다는 데 있다. 가령, 《사상품덕》의 9학년 교과서는 한 권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도덕과 법치》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다. 《사상품덕》은 47개의 과(課)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덕과 법치》는 53개이다. 표현이나 순서도 상당 부분 뒤섞여 있는데, 예컨대 《사상품덕·7년·상》 제5과에 있는 "새로운 기대"는 《도덕과 법치·7년·상》 제3과에 있는 "자기 발견"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자면, 《사상품덕》과 《도덕과 법치》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두 교과서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려면, 그 둘

을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먼저 맞춰줘야 한다.

다행히 《사상품덕》에는 ‘교과 표준’¹⁵⁾이 존재한다. 《사상품덕》은 국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교육부는 9종의 교과서가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교과 표준’은 《도덕과 법치》에서도 준수되고 있다.¹⁶⁾ 따라서 이 ‘교과 표준’을 기준으로 그 두 교과서의 개별 과들을 다시 분류한다면, 그 차이를 살펴보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교과 표준’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상품덕》의 ‘교과 표준’

성장 중의 나	나와 타인, 그리고 집체	나와 국가, 그리고 사회
자아 인식	교류와 소통	사회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
자존자강	집체 속의 성장	국정(國情) 이해와 국가 사랑
마음 속의 법	권리와 의무	법률과 질서

《사상품덕》의 ‘교과 표준’은 그 다뤄야 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성장 중의 나”이고, 두 번째가 “나와 타인, 그리고 집체”이며, 세 번째가 “나와 국가, 그리고 사회”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다시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다. 가령 “성장 중의 나” 아래에 “자아 인식”과 “자존자강”, “마음 속의 법”이 자리하는 식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 중의 나”는 개인 차원, “나와 타인, 그리고 집체”는 집단 차원, 마지막으로 “나와 국가, 그리고 사회”는 국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표에 맞춰 《사상품덕》 47개 과를 분류해보면 <표 2>와 같다.

www.kci.go.kr

15)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義務教育思想品德課程標準》,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1.

16) 駱云錦, <統編《道德與法治》教材解析>, 《陝西教育》2018年제2期.

<표 2> 《사상 품덕》의 47개 과(課)의 분포

성장 중의 나 (38.30%)	나와 타인, 그리고 집체 (38.30%)	나와 국가, 그리고 사회 (23.40%)
자아 인식 12.77%(6개)	교류와 소통 10.64%(5개)	사회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 6.38%(3개)
자존자강 19.15%(9개)	집체 속의 성장 10.64%(5개)	국정(國情) 이해와 국가 사랑 14.89%(7개)
마음 속의 법 6.38%(3개)	권리와 의무 17.02%(8개)	법률과 질서 2.13%(1개)

이 분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자존자강”이다. 이 영역은 주로 개인의 자존감이나 책임감, 자립심, 시비 관념 등을 교육하며, 생명의 가치나 자연의 소중함도 여기서 다뤄진다. “권리와 의무”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다뤄지며, 재산권 및 상속권, 소비자의 권익 등의 구체적인 권리도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제도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다뤄지는데, 계획 출산 정책이라든지 다민족 국가의 특성,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의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화나 문화의 다양성, 중화 전통 등도 이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3> 《도덕과 법치》 53개 과(課)의 분포

성장 중의 나 (33.96%)	나와 타인, 그리고 집체 (20.76%)	나와 국가, 그리고 사회 (45.28%)
자아 인식 20.75%(11개)	교류와 소통 9.43%(5개)	사회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 9.43%(5개)
자존자강 5.66%(3개)	집체 속의 성장 7.55%(4개)	국정(國情) 이해와 국가 사랑 28.30%(15개)
마음 속의 법 7.55%(4개)	권리와 의무 3.77%(2개)	법률과 질서 7.55%(4개)

같은 방식으로 《도덕과 법치》를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이다. 전체 53개 과 중에서 15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상품덕》과 비교해보아도 이 수치는 눈길을 끄는데, 《사상품덕》에서는 그 비중이 대략 15%에 불과했지만, 《도덕과 법치》에서는 28%까지 상승하였다. 이와 함께 그 변화가 비교적 큰 또 다른 영역으로 “자아 인식”과 “자존자강”, “권리와 의무”, “법률과 질서” 등이 있다. 우선 “자아 인식”과 “법률과 질서”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사상품덕》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12.77%와 2.13%이었는데, 《도덕과 법치》에서는 20.75%와 7.55%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존자강”과 “권리와 의무”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사상품덕》에서는 각각 19.15%와 17.02%이었는데, 《도덕과 법치》에서는 5.66%와 3.77%로 내려앉았다.

여기서 “자아 인식”과 “자존자강”에 나타난 변화는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모두 “성장 중의 나”라고 하는 대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관점에서 따라서는 “자아 인식”으로 분류된 과를 “자존자강”으로 옮길

수 있다. 예컨대 《도덕과 법치·9년·하》 말미에 있는 세 개 과는 중학교 졸업 이후의 태도 등을 다룬다. 즉 이 부분을 “자아 인식”이 아니라 “자존자강”으로 분류하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두 영역의 경계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독이 되기 쉽다. “성장 중의 나”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맥락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덕과 법치》의 변화는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 “법률과 질서”, “권리와 의무”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두 개는 크게 늘어났지만 마지막 한 개는 크게 줄어들었다. “권리와 의무”가 차지하던 지면이 상당부분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 및 “법률과 질서”로 옮겨간 것이다. 실제로 “권리와 의무”에 속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삭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사상품덕》에서 상세하게 논의되던 부분들이 《도덕과 법치》에서 대단히 소략하게 다루지고 있다. 예컨대 《사상품덕》에서는 초상권, 사생활 보호, 재산권, 소비자 권익 등이 모두 서로 다른 과에서 별도로 설명되지만, 《도덕과 법치》는 그 사안들을 모두 하나의 과에서 “국민 권리”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다.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줄어든 자리에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 그리고 “법률과 질서” 관련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청소년 법치 교육 대강>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¹⁷⁾ 중국 교육부와 사법부, 그리고 법률 보급 관공청은 2016년에 국민 교육 체계에 법치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 교육청 및 사법기관 등에 이 문건을 하달한 바 있다. 청소년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것인지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학교 단계(의무교육 7-9년)의 주요 교육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는 헌법 교육의 심화이고, 두 번째는 민사 법률의 기본 원칙 이해이며, 세 번째는 정부 및 공공 업무의 법률 원칙 이해이고,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의 위법 행위 구별이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국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 이해이다.

17) 教育部·司法部·全國普法辦, <青少年法治教育大綱>, 《中小學德育》2016年第8期.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직간접으로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 및 “법률과 질서”의 내용에 속한다. 분석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도덕과 법치》 속의 중국

《도덕과 법치》의 변화가 “국정 이해와 국가 사랑” 및 “법률과 질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할까? <표 4>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두 개 영역에 해당하는 과를 교과서별 및 주제별로 다시 분류해 보았다. 어렵지 않게, ‘애국심’과 관련된 내용보다 ‘국정(國情)’ 및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제별 분류가 어떤 절대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상품덕》과 《도덕과 법치》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큰 범주에서 비교 대상을 한정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틀이 있어야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그 핵심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대략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 대한 설명이 많아졌고, 둘째, 중국의 기본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셋째, 국가 기구를 설명하는 부분이 증가했고, 넷째,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늘었다. 그 각각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미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법치’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모든 경우에서 부각되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헌법’의 경우처럼 ‘법치’의 맥락이 뚜렷할 때조차 여전히 ‘국가’를 설명하려는 의지가 감지된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촉발했는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각되고 있다.

<표 4> 분석 대상 과(課)의 교과서별·주제별 분류

	《사상품덕》	《도덕과 법치》
국정 (國情)	기본 국정(國情)의 인식(9-3) 기본국책·발전전략의 이해(9-4) 정치생활의 참여(9-6) 경제 발전의 관심(9-7)	국가 이익 지상(8-상-8) 총체적인 국가안보관 수립(8-상-9) 아름다운 조국의 건설(8-상-10) 헌법권위의 수호(8-하-1) 헌법실현의 보장(8-하-2) 우리나라의 기본제도(8-하-5) 우리나라의 국가기구(8-하-6) 강국의 길에서(9-상-1) 혁신구동발전(9-상-2) 민주가치의 추구(9-상-3) 법치중국의 건설(9-상-4)
애국심	중화문화와 민족정신(9-5) 정신문명건설의 헌신(9-8) 우리의 공동 이상 실현(9-9)	정신가원의 수호(9-상-5)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9-상-6) 중화 일가족(9-상-7) 중국인과 중국의 꿈(9-상-8)
세계화	다원문화의 “지구촌”(8-상-5)	함께 하는 지구촌(9-하-1)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9-하-2) 세계와의 연결(9-하-3) 세계와의 발전(9-하-4)

(1) 헌법의 위상 제고

《도덕과 법치》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헌법에 대한 설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사상품덕》은 헌법을 정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만, 《도덕과 법치》는 두 개 과에 걸쳐 헌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 하기는 힘들다. 인권 존중 및 보장이나, 국가 통치 및 안위의 근거 등은 모두 두 교과서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해당한다. 헌법과 기타 법률 사이의 관계 역시 《사상품덕》과 《도덕과 법치》에 공히 수록되어 있는 주

제이다. 구체적인 인용 자료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는 힘들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도덕과 법치》가 상대적으로 ‘권력의 규범화’를 더 강조한다.

헌법은 국가기구를 조직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직권의 행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어떤 국가기관과 사회조직, 그리고 개인은 모두 헌법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¹⁸⁾

위 인용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덕과 법치》는 헌법이 직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 한계도 지워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사상품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사상품덕》은 기껏해야 헌법이 모든 활동의 기준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한계를 넘지시 암시할 뿐이다.

(A)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기본 활동 준칙이다. 헌법 제5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 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¹⁹⁾

(B) 권력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제대로 운용한다면 인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만약 남용된다면 부패가 만연해져 그 해가 끝이 없게 된다. 권력 운용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이 공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권력을 제도의 틀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 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²⁰⁾

위 두 인용문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A)와 (B)는 모두 동일한 헌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 맥락에서는 사뭇 다른 면이 있다. (A)

18)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八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13쪽.

19) 班華 主編, 《思想品德·九年級·全一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5, 83쪽.

20) 朱小蔓 主編, 앞의 책, 3쪽.

의 경우에는 헌법이 모든 활동의 기본 준칙임을 설명하면서 그 헌법 조항을 인용하지만, (B)는 권력의 양면성을 제기하면서 그 헌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권력을 제약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헌법 정신을 제기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헌법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중국의 모든 권력이 헌법에 기초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권력에 한계를 지우는 것도 헌법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권력이 직접적으로 '국가 권력'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어지는 단락에서 "국가 권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²¹⁾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의 정신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국가 권력의 규범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단순히 '반부패'나 '공직 기강'의 문제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은 《도덕과 법치》의 헌법 설명 중에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헌법의 위상을 높이거나 그 정신을 교육하는데, 실제로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덕과 법치》는 단순히 '헌법 지상'을 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의 역사적인 맥락도 곁들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헌법의 시작은 신중국 성립 이전에 제정된 '공동강령(共同綱領)'이었고, 그 첫 번째 제정은 1954년의 이른바 '오사헌법(五四憲法)'이었다. 《도덕과 법치》는 《사상품덕》과 달리 이러한 중국 헌법의 역사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분명 헌법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신중국의 탄생이 헌법에 기초한다는 사실도 부각시킨다. 중국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설명도 그 상황이 비슷하다. 앞서 언급했듯, 《사상품덕》과 《도덕과 법치》는 모두 인권 존중 및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양상을 들여다보면, 두 교과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발전권'인데, 《사상품덕》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지만 《도

21) 朱小蔓 主編, 앞의 책, 15쪽.

덕과 법치》는 이를 중국 헌법의 대표적인 인권으로 소개하고 있다. 본래 발전 권은 모든 국민이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으로, 빈곤 퇴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 보았고, “빈곤 퇴치가 중국 인권 사업의 가장 분명한 성과”²²⁾라고 자평해왔다. 실제로 이 부분은 ‘중국식 인권’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중국의 헌법 정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이해하고 있는 인권을 설명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도덕과 법치》는 분명 헌법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그 정신을 함양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라는 ‘국가’의 설명과 관련을 맺고 있다. ‘권력의 규범화’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사실은 ‘국가 권력’의 규범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의 역사도 새롭게 강조되는데, 그 역시 신중국의 정통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인권 역시 그 상황이 비슷한데,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이 ‘중국식 인권’으로 귀결된다. 헌법이 《도덕과 법치》에서 강조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그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2) ‘기본 제도’라는 설명 방식

《도덕과 법치》에 나타난 변화 중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중국의 ‘기본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도덕과 법치》는 이를 ‘기본 경제제도’와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서 각각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선 ‘기본 경제제도’는 공유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근본 정치제도’는 인민 대표대회 제도를 의미하고, ‘기본 정치제도’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제도’, ‘소수 민족 지역 자치 제도’, ‘기층 군중 자치 제도’를 함께

22) 朱小蔓 主編, 앞의 책, 9쪽.

지칭한다. 이 세 가지가 중국의 ‘기본 제도’로 《도덕과 법치》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전의 《사상품덕》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²³⁾라는 부분도 있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인민 주인의 근본 정치 제도”²⁴⁾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으며, “소수 민족 자치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 중 하나”²⁵⁾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사상품덕》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한 데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었다. 만약 사전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문구들에 등장하는 ‘근본’과 ‘기본’이 하나의 수사인지, 아니면 개념인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반면 《도덕과 법치》는 이 내용을 한 데 묶었을 뿐 아니라, 그 목차를 통해 그것이 개념임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8년 하책 제5과의 제목이 ‘우리나라의 기본 제도’인데, 그 아래 소제목으로 ‘기본 경제제도와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가 제시되어 있다.

사실 ‘근본’과 ‘기본’의 구별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다. ‘근본 정치제도’의 경우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부터 존재했던 공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 개가 하나의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2011년 당시 총서기였던 후진타오(胡錦濤)가 창당 90주년 연설과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이 셋을 묶어 제시하였다. 주의할 사실은 당시 후진타오 총서기가 이 셋을 묶었던 맥락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제도’의 차원에서 ‘기본 경제제도와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가 언급되었다. 따라서 만약 《도덕과 법치》가 이 세 가지를 한 데 묶으려 했다면, 그 제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여야 했다.

23) 班華 主編, 앞의 책, 93쪽.

24) 班華 主編, 앞의 책, 77쪽.

25) 班華 主編, 앞의 책, 42쪽.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건지 및 정비해야 한다.²⁶⁾

위 인용문은 《사상품덕》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본 경제제도'는 이미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함께 서술된 적이 있다. 바꿔 말하자면, 《도덕과 법치》가 그 세 가지 제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로 제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기본 제도'가 그 제목으로 선택되었다면, 이는 대단히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봐야 한다. 그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로 표기되었을 때보다 '우리나라의 기본제도'로 표기되었을 때 '중국'이라는 국가가 훨씬 부각된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로 등장하였다면, 아무래도 강조되는 것은 '사회주의', 혹은 '중국공산당'이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도덕과 법치》에 등장하는 새로운 자료들은 눈길을 끄는 면이다. 가령 《도덕과 법치》는 '통일 전선'을 설명할 때 중국에 존재하는 8개의 민주당파를 따로 부연하고 있다.²⁷⁾ '지역 자치'에서는 다섯 개 소수 민족 자치 지역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요구²⁸⁾한다. '기층 자치'와 관련해서도 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사상품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에 속한다. 초점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국가 기구의 재구성

'국가 기구' 역시 《도덕과 법치》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속한다. 《사

26) 班華 主編, 앞의 책, 96쪽.

27) 朱小蔓 主編, 앞의 책, 70쪽.

28) 朱小蔓 主編, 앞의 책, 71쪽

29) 朱小蔓 主編, 앞의 책, 74-75쪽.

《상품덕》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도덕과 법치》는 8학년의 하책 제6과에서 '국가 기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가 주석, 국무원,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그 '국가 기구'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경우에는 《사상품덕》에서도 그 설명이 비교적 자세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 설명 방식을 살펴보면 《도덕과 법치》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상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권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의 다른 국가 기관들은 모두 그 기관을 통해 만들어지며, 그 기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으로 그 직권에 헌법 개정, 헌법 실현의 감독, 입법권, 임면권, 중요 사안 결정권, 감독권 등이 있다.³⁰⁾

위는 《사상품덕》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중국에서 국가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무원이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은 언제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영향 아래 있고, 따라서 그 위상이나 권력을 따로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최소한 《사상품덕》에서 중국의 국가 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같음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법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외의 다른 국가 기구에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령 국가 주석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덕과 법치》는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³¹⁾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그 선출 방식 및 자격 요건, 임기 등을 거론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덕과 법치》의 설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간다. 법령 공포권과 명령 반포

30) 班華 主編, 앞의 책, 77쪽.

31) 朱小蔓 主編, 앞의 책, 81쪽.

권, 임명권, 외교권, 훈장수여권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주석의 직권은 《사상품덕》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에 속한다. 국가 주석을 단순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의 중요한 국가 기구로 다시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감찰위원회의 경우도 그 상황은 비슷하다. 사실 감찰위원회는 그 성립 자체가 최근(2018년)이고 그 성격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겹치기 때문에,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도덕과 법치》는 그 직책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감독 직책. 감독은 감찰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감찰위원회는 헌법과 감찰법, 그리고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공권력 행사를 감독하며, 권력이 남용되거나 폐쇄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한다. 권력을 제도의 틀 안에 가둬야 한다.³²⁾

위 인용문은 감찰위원회의 직책 중 하나인 '감독'에 대한 설명이다. 《도덕과 법치》는 이외에도 '조사'와 '처분'을 감찰위원회의 주요 직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국가 주석, 국무원 등과 비교할 때, 감찰위원회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도덕과 법치》는 이를 중국의 '국가 기구'로 등장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나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역할과 권한에 초점을 맞춰 중국이라는 '국가'를 다양한 층위에서 조망해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도덕과 법치》에 등장하는 아래 문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 기구는 국가 직능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기관의 통칭으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가 권력기관, 국가 주석, 행정 기관, 감찰 기관, 사법 기관 등이 있다.³³⁾

www.kci.go.kr

32) 朱小蔓 主編, 앞의 책, 90쪽.

33) 朱小蔓 主編, 앞의 책, 76쪽.

중국 헌법의 조문에 충실하다면, 위에 인용한 《도덕과 법치》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중국 헌법은 중국의 국가 기구를 “권력 기관, 국가 주석, 행정 기관, 검찰 기관, 사법 기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도리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주석, 국무원 등의 구체적인 기구 이름으로 지칭한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권력기관’이라 칭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기구를 제시하면서 ‘권력기관’을 미리 언급하지는 않는다. 행정 기관 및 검찰 기관도 마찬가지고, 사법 기관은 아예 그러한 단어 자체가 중국 헌법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도덕과 법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그 역할 및 권한에 맞춰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국 헌법의 기본적인 설명 방식마저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4) 국가 정체성의 이데올로기

《도덕과 법치》에 중공중앙의 새로운 이념이 다수 포함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가령 《사상품덕》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나 네 가지 기본 원칙의 견지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지만, 《도덕과 법치》는 이 부분을 간략히 다루는 대신, 중국의 꿈이나 혁신 구동 전략, 아름다운 생활의 요구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 중공중앙 지도부의 철학과 이념이 《도덕과 법치》에 적극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줄었는지, 혹은 중국의 꿈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은 《도덕과 법치》의 변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사상품덕》이든 《도덕과 법치》이든, 둘 모두 중공중앙 지도부의 정치 이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이 정작 주목하는 부분은 《도덕과 법치》에 이와는 다른 방식의 국가 정체성 교육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이익과 개인 이익은 근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두 가지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이익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때때로 개인 이익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전면적인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국가 이익을 중요시해야 하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³⁴⁾

위 인용문은 《도덕과 법치·8년·상》 제8과 “국가이익 지상”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국가 이익은 장기적이고 전면적이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이익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사상품덕》에서는 보기 힘든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사상품덕》은 국가 이익을 따로 교육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이익 충돌을 다룰 때조차 그 우선권을 간접적으로만 제시한다.

집체주의 정신을 사회 생산과 생활의 각 층위로 전파하여 사람들이 국가, 집체, 개인 사이의 이익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인이익은 집체이익을 따라야 하고, 부분적인 이익은 전체 이익을 따라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은 장기적 이익을 따라야 한다. 소집단주의와 본위주의를 반대해야 하고, 공을 훼손시켜 사를 배불리거나 다른 사람을 해쳐 자신을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이상과 분투를 광대한 인민의 공통 이상과 분투 속에 녹여야 한다.³⁵⁾

위는 《사상품덕·9년》의 제2과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가이익 지상주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이익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 이익의 우선권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비슷한 부분을 《도덕과 법치》에서 찾아보아도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도덕과 법치》는 “개인 이익과 집체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집체주의를 견지해 집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 위에 두어야”³⁶⁾ 한다고 역

34)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八年級·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93쪽.

35) 班華 主編, 앞의 책, 20쪽.

36)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七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64쪽.

설한다. 《도덕과 법치》가 “국가이익 지상”을 하나의 과에서 따로 교육한다는 점,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이 대단히 직접적이라는 점은 이 교과서가 의도적으로 ‘국가’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려준다.

비슷한 상황을 전지구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덕과 법치》에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늘어난 것 중 하나가 전지구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상품덕》은 이를 단 하나의 과에서만 다루지만, 《도덕과 법치》는 무려 네 개 과에서 다루고 있다. 게다가 《사상품덕》은 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지만, 《도덕과 법치》는 문화적인 층위를 넘어 경제 및 정치적 층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상품 생산은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완성되며, 경제적 전지구화의 중요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전지구화의 시대에서는 상품 설계와 부품생산, 조립, 판매, 애프터서비스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각국은 자신의 우위를 활용해 생산 과정에 참여하며 공동으로 상품 생산을 완성한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모두 자신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³⁷⁾

위 인용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루지는 주제는 전지구적인 분업 체계인데, 지금의 상품 생산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많아지면, 중국에 대한 설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지구적인 체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보여야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모두 중국의 현 지위를 설명하는 것들이 된다. 중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가 제시될 수밖에 없고, 브릭스(BRICs)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국제 협력 사업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환경이나 빈곤 등의 전지구적인 과제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심지어 《도덕과 법치》는 이 전지구적인 분업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겪었던 공장 폐쇄의 경험을

37)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九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5쪽.

들려주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전지구적인 체제에 대한 설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도덕과 법치》의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중국’을 감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다.

4. 나가며: 《도덕과 법치》의 ‘중국’ 상상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과 법치》의 변화가 주로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대부분 중국이라는 ‘국가’를 설명한다. ‘기본 제도’는 그것이 본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도에 대한 것임에도 《도덕과 법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제도인양 등장하고 있다. ‘국가기구’ 역시 중국 헌법의 표현을 저버리면서까지 그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다. 중국이라는 ‘국가’를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기본 제도’와 ‘국가기구’의 편집 속에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부분에서조차 중국이라는 ‘국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헌법’에 대한 설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증가한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세계화와 전지구화에 대한 설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설명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중국이라는 ‘국가’를 알려주는 것들이다. 심지어 《도덕과 법치》는 ‘국가 이익 지상주의’를 노골적으로 피력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그다지 관련이 없음에도, 정작 해당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 보이는 것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설명이다. 물론 《도덕과 법치》가 중국공산당의 위상이나 그 정치적 이념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아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대부분 ‘국가’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이전만큼 도드라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사상품덕》은 '당의 기본노선'을 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도덕과 법치》는 '당의 기본노선'을 여기저기에 흩어놓고 있다. 이는 《사상품덕》이 '국가'에 대한 설명을 여기저기에 흩어 놓은 것과 대단히 흡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과 법치》가 '법치' 교육의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뜻밖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덕과 법치》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법치' 교육의 강화가 그 주된 배경이었다. 그러나 《도덕과 법치》에 나타난 실제 변화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설명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법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설명일 수 있다.

< 參考文獻 >

- 곽한영, <중국 중등교육에서의 법교육>, 《법교육연구》 7권 1호, 2012.
- 김도경, <신시기 중국의 '정치' 교과서와 '사유·시장·개방'의 의미 변화>, 《중국현대문학》 79호, 2016.
- 윤세병,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3호, 2019.
- 이희옥, <시진핑 시기 반부패운동의 정치논리 - 시장, 법치, 거브너스의 관계>, 《중소연구》 39권 1호, 2015.
- 조영남, <중국의 법치 논쟁과 정치개혁>, 《한국과 국제정치》 26권 4호, 2010.
- 차우규, <중국의 초,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16호, 2003.
- Young Nam Cho,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Law": China's Rule of Law Policy as Political Reform,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1, No. 1 (June 2014).
- 班華 主編, 《思想品德·七年級·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4.
- 班華 主編, 《思想品德·七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4.
- 班華 主編, 《思想品德·八年級·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5.
- 班華 主編, 《思想品德·八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5.
- 班華 主編, 《思想品德·九年級·全一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7.

- 黃學賢, <法治政府的內在特征及其實現>, 《江蘇社會科學》2015年 第1期。
-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http://www.gov.cn/test/2007-08/29/content_730614.htm (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 教育部·司法部·全國普法辦, <青少年法治教育大綱>, 《中小學德育》2016年 第8期。
- 教育部辦公廳, <教育部辦公廳關於2015年中小學教學用書有關事項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s8001/201503/t20150323_189375.html (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 教育部辦公廳, <教育部辦公廳關於2016年中小學教學用書有關事項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1604/t20160428_241261.html(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 教育部辦公廳, <教育部辦公廳關於印發2019年中小學教學用書目錄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1906/t20190605_384649.html (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 藍蔚青, <從“抓綱治國”到“依法治國”>, 《党政研究》2015年 第1期。
- 駱云錦, <統編《道德与法治》教材解析>, 《陝西教育》2018年 第2期。
- 李步云, <依法治國的回顧与展望>, http://www.legaldaily.com.cn/zt/content/2014-11/09/content_5837466.htm?node=69127 (검색일: 2019년 10월 1일)。
- 任中平, <依法治國必須清除家長制殘余>, 《理論与改革》2015年 第4期。
- 習近平, <關於《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的說明>, 《求是》2014年 第21期。
- 徐曉冬, <依法治國要處理好十大協同關係>, 《人民論壇》2014年 第20期。
- 燕繼榮, <依法治國与國家治理現代化>, 《中國井冈山干部學院學報》2015年 第1期。
- 俞可平, <依法治國的政治學意蘊>, 《探索与爭鳴》2015年 第2期。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義務教育思想品德課程標準》,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1。
- 中共中央, <中共中央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干重大問題的決定>, http://www.gov.cn/jzhengce/2014-10/28/content_2771946.htm (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七年級·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七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八年級·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7。
-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八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7。
-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九年級·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朱小蔓 主編, 《道德與法治·九年級·下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18.

< Abstract >

“Morality & Rule of Law”'s Imagination of China

Kim, Dokyung · Jung, Minyoung

Since 2016, the ideological & moral education of China has been renamed “Morality & Rule of Law.” At the same time,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extbooks has also been changed into state affairs. This paper analyzes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textbooks, and suggests what is the meaning of those change. The changes can be summed up in four: first, there has been an increased explanation of the Chines Constitution; second, a section has been added to explain China’s basic system; third, there has been a lot of detail explaining the state apparatus; finally, there are more depictions of national identity. But these four changes are not necessarily related to the rule of law. Rather, what is highlighted in all those cases is a description of the country, China. It wa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ducation of the rule of law that “Morality & Rule of Law” have been created, but what was strengthen in the textbooks is the imagination of China.

Key words: the ideological & moral education, Morality & Rule of Law, Chinese Constitution, Rule of Law, Compulsory Education in Chin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10. 31	2019. 11. 17	2019. 11. 17	2019. 12. 1	2019. 12. 31

